|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교통운수부 령 2013년 제9호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3년 8월 22일의 제10차 부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부장 양전당2013년 8월 29일 교통운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1.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중국 내에 기업법인을 설립하여 국제선박 대리업무를 경영하거나 또는 중국의 기업법인이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고정 영업장소와 필요한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고급 업무관리요원 중 최소 2인은 3년 이상 국제 해상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국제 선박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마땅히 개업 후 30일 내에 영업장소 증명서류와 관련 인원의 자격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교통운수부에 등기, 보고해야 한다. 국제 선박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기업종보를 변경하거나 또는 국제 선박대리 경영활동에 더 이상 종사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경영활동을 중지한 15일 내에 교통운수부에 등기, 보고해야 한다.”2.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국제 선박 관리경영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지사가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해운조례》제9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아울러 《해운조례》제10조와 본 실시세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등기 신청서류는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분석보고서 (3) 모회사의 상업등기서류 (4) 모회사의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 등기증》 부본 (5) 모회사가 지사 경영범위를 확정한 확인서류 (6) 경영장소 증명서류 (7) 《해운조례》 제9조에 규정한 인원의 업무종사 경력 또는 자격 증명서류.”3. 제21조 제1항 중 “국제선박대리경영자”를 삭제.4. 제30조를 “국제 정기선운수 경영자가 대리인에게 선창주문 접수, B/L발급, 운임 대리수취 등의 업무를 위임할 경우, 위탁을 받은 대리인은 법에 의해 설립한 국제선박대리경영자여야 한다.”5. 제33조를 삭제.6. 제42조를 제41조로 조정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을 통해 교통운수부에 본 실시세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한 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완벽하게 갖춘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근무일 내에 관련 서류 및 의견을 교통운수부에 전달, 보고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상기 전달, 보고 서류와 의견을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본 실시세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한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운수부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유관 부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관한 필요한 심사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필요한 허가서류를 취득한 후에는 유관 부문의 기업설립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교통운수부에서 《국제선박대리경영자격등기증서》를 수령해야 한다.”7.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를 삭제.8. 제63조를 제58조로 조정하고 내용을 “정기선 공회협의서, 운영협의서와 운수가격협의서 또는 국제선박대리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보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운수부는 《해운조례》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실시세칙 제7조, 제32조에서 규정한 보고 등기인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 정기선공회가 규정에 따라 보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회구성원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이 밖에 조항의 순서와 일부 문자에 대해 상응하게 조정 및 수정한다.이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실시세칙>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반포한다. |  |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的决定**交通运输部令2013年第9号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的决定》已于2013年8月22日经第10次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部长　杨传堂 2013年8月29日　　交通运输部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作如下修改： 　　一、将第七条修改为：“在中国境内设立企业经营国际船舶代理业务，或者中国企业法人经营国际船舶代理业务，应当有固定的营业场所和必要的营业设施，其高级业务管理人员中至少应当有2人具有3年以上从事国际海上运输经营活动的经历。 　　从事国际船舶代理业务的企业，应当在开业后30日内持营业场所证明文件和有关人员资历证明文件向交通运输部备案。 　　从事国际船舶代理业务的企业变更企业信息或者不再从事国际船舶代理经营活动的，应当在信息变更或者停止经营活动的15日内，向交通运输部备案”。 　　二、将第九条修改为：“国际船舶管理经营者在中国境内的分支机构经营相关业务的，应当符合《海运条例》第九条的规定，并按照《海运条例》第十条和本实施细则第八条的规定进行登记。登记申请材料应当包括： 　　（一）申请书； 　　（二）可行性分析报告； 　　（三）母公司的商业登记文件； 　　（四）母公司的《国际海运辅助业经营资格登记证》副本; 　　（五）母公司确定该分支机构经营范围确认文件； 　　（六）营业场所的证明文件； 　　（七）《海运条例》第九条规定的人员的从业资历或者资格的证明文件”。 　　三、删去第二十一条第一款中的“国际船舶代理经营者”。 　　四、将第三十条修改为：“国际班轮运输经营者委托代理人接受订舱、代签提单、代收运费等项业务的，委托的代理人应当是依法成立的国际船舶代理经营者”。 　　五、删去第三十三条。 　　六、将第四十二条改为第四十一条，并修改为：“设立外商投资企业经营国际船舶代理业务，应当通过拟设立企业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向交通运输部提交符合本实施细则第七条第一款规定条件的申请材料。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收到完整齐备的上述材料后，应当于１０个工作日内将有关材料及意见转报交通运输部。 　　交通运输部应当自收到转报的上述材料和意见之日起３０个工作日内，按照本实施细则第七条第一款的规定进行审核，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发给批准文件；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获得批准的申请人应当持交通运输部批准文件，按照国家有关外商投资企业的法律、法规的要求到有关部门办理相应的设立外商投资企业的审批手续。取得相应的批准文件后，到交通运输部领取《国际船舶代理经营资格登记证书》”。 　　七、删去第四十八条、第四十九条、第五十条、第五十一条。 　　八、将第六十三条改为第五十八条，并修改为：“班轮公会协议、运营协议和运价协议、国际船舶代理经营者未按规定向交通运输部备案的，由交通运输部依照《海运条例》第四十五条的规定，对本实施细则第七条、第三十二条规定的备案人实施处罚。班轮公会不按规定报备的，可对其公会成员予以处罚”。 　　此外，对条文的顺序和部分文字作相应的调整和修改。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发布。 |